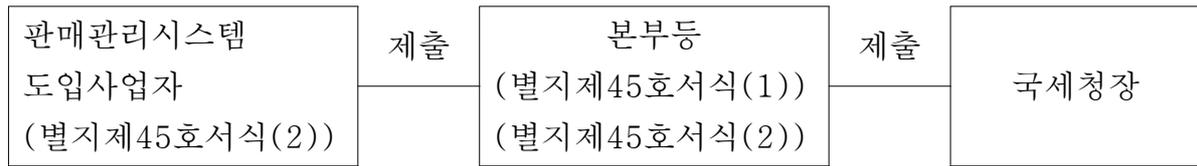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가.신청서 처리절차



1.판매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2)를 작성하여 본부등에 제출합니다.

2.본부등은 별지 제45호서식(1)을 작성하여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본부등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3항에 규정한 본부 또는 유통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나.작성요령

1.사업개시일 ⑥란은 본부등이 판매관리시스템 사업을 개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2.가맹점수 ⑦란은 본부등과 연결하여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총수를 기재합니다.

3.자료수집방식 ⑧란은 해당란에 0표 합니다.

(1)즉시수집방식 : 가입자의 판매정보가 판매즉시 본부등의 컴퓨터에 입력되는 방식

(2)일괄수집방식 : 가입자의 매출기록을 일정기간별로 모아서 본부등에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

예)매시간, 매일, 매월

4.관련장비 ⑨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본부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재합니다.

5.도입가동일 ⑬란은 신청사업자가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동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이 시작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6.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